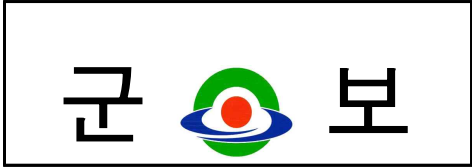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60호 2024. 10. 7.(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4-34호)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4-34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정수장의 운영·관리비용 상승과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요금으로 분담금의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
- 나. 이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통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 조정(안 별표 3)

구 분	단계 (m ³ /월)	현 행	개 정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요금 (원/m ³)	요금 (원/m ³)	요금 (원/m ³)	요금 (원/m ³)	요금 (원/m ³)	요금 (원/m ³)
가정용	1 ~ 10	345	388	436	490	551	620
	11 ~ 30	805	905	1,018	1,145	1,288	1,449
	31이상	1,108	1,246	1,401	1,576	1,773	1,994
일반용	1 ~ 20	711	800	900	1,013	1,140	1,283
	21 ~ 50	1,296	1,458	1,640	1,845	2,076	2,336
	51 ~ 100	1,641	1,846	2,077	2,337	2,629	2,958
	101 ~ 300	1,944	2,187	2,460	2,768	3,114	3,503
	301이상	2,080	2,340	2,633	2,962	3,332	3,749
대중탕용	1 ~ 200	677	761	856	963	1,083	1,218
	201 ~ 300	951	1,069	1,202	1,352	1,521	1,711
	301 ~ 500	1,301	1,463	1,645	1,850	2,081	2,341
	501이상	1,628	1,831	2,059	2,316	2,605	2,930
산업용	m ³ 당	787	885	996	1,121	1,261	1,419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맑은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doddossg@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

3) 팩스 : 054-650-6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전화 : 054-650-69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수도 급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업종별 요율표(제15조제3항 관련)

업종별	단 계 (m³/월)	m³당 단가(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가정용	1 ~ 10	388	436	490	551	620
	11 ~ 30	905	1,018	1,145	1,288	1,449
	31 이상	1,246	1,401	1,576	1,773	1,994
일반용	1 ~ 20	800	900	1,013	1,140	1,283
	21 ~ 50	1,458	1,640	1,845	2,076	2,336
	51 ~ 100	1,846	2,077	2,337	2,629	2,958
	101 ~ 300	2,187	2,460	2,768	3,114	3,503
	301 이상	2,340	2,633	2,962	3,332	3,749
대중탕용	1 ~ 200	761	856	963	1,083	1,218
	201 ~ 300	1,069	1,202	1,352	1,521	1,711
	301 ~ 500	1,463	1,645	1,850	2,081	2,341
	501 이상	1,831	2,059	2,316	2,605	2,930
산업용	m³당	885	996	1,121	1,261	1,419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용 상승과 분뇨수집·운반에 따른 관리대행 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

나. 이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와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그리고 배수설비 시공·유지관리의 세부 사항 명시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 준공 등에 관련하여 세부 지침 고시 근거 마련(안 제8조제5항)

나. 배수설비 유지·관리 등에 관련하여 세부 지침 고시 근거 마련(안 제9조 제3호)

다. 배수설비 점검(검사) 서식 마련(안 제9조 제4호)

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산정기준 조정 (안 제10조제2항)

구 분	단 계 (m³/월)	종 전 요금 (원/m³)	개 정				
			2025년 요금 (원/m³)	2026년 요금 (원/m³)	2027년 요금 (원/m³)	2028년 요금 (원/m³)	2029년 요금 (원/m³)
가정용	1 ~ 20	192	221	254	292	335	385
	21 ~ 40	289	332	381	438	503	578
	41 이상	390	443	509	584	671	771
일반용	1 ~ 50	493	565	649	745	856	983
	51 ~ 100	641	734	844	969	1,113	1,278
	101 ~ 300	839	960	1,103	1,267	1,455	1,671
	301 이상	1,084	1,243	1,428	1,640	1,883	2,163
대중탕용	1 ~ 300	342	392	451	517	594	683
	301 ~ 500	443	510	586	673	773	888
	501 이상	580	667	766	880	1,010	1,161
산업용	m³당	361	413	475	545	626	719

마.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조정(안 제18조제1항)

구 분	요금명	종 전 요금 (원/m³)	개 정		
			2025년 요금 (원/m³)	2026년 요금 (원/m³)	2027년 요금 (원/m³)
수거식 화장실	수거 운반료	8,436	삭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요금과 통일)		
	처리 수수료	1,165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수거 운반료 (기본)	11,115	11,900	12,700	13,250
	수거 운반료 (초과)	930 (원/100L)			

바. 요금 감면 사유 중 빗물이용시설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맑은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doddossg@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

3) 팩스 : 054-650-6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전화 : 054-650-69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군수는 제2항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수는 제1호와 관련한 배수설비 유지·관리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의 검사(점검)은 별표9에 따른 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제2항의 “별표1”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10조제3항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5조의 부분 중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15조(개별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호 “별표6”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19조제1항 제3호 부분 중 “중수도를”를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 업종은 「예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업종별 요율 표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 하수처리구역

업종별 사용요금						
업 종	단계 (m³/월)	m³당 단가(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가정용	1 ~ 20	221	254	292	335	385
	21 ~ 40	332	381	438	503	578
	41이상	443	509	584	671	771
일반용	1 ~ 50	565	649	745	856	983
	51 ~ 100	734	844	969	1,113	1,278
	101 ~ 300	960	1,103	1,267	1,455	1,671
	301이상	1,243	1,428	1,640	1,883	2,163
대중탕용	1 ~ 300	392	451	517	594	683
	301 ~ 500	510	586	673	773	888
	501이상	667	766	880	1,010	1,161
산업용	m³당	413	475	545	626	719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18조 제1항)

1. 수거식 화장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와 동일 적용)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개 정			비 고
	2025년	2026년	2027년	
	요금 (원/m ³)	요금 (원/m ³)	요금 (원/m ³)	
수집·운반료 (1,000리터 당)	11,900	12,700	13,250	○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 의 량에 따라 징수 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절삭

가. 산정 예시

1) 2.3m³ 수거 기준

년도	계	수집·운반료
2025	27,370원	(11,900원X2) + (11,900원X0.3)
2026	29,210원	(12,700원X2) + (12,700원X0.3)
2027	30,475원	(13,250원X2) + (13,250원X0.3)

【별표 9】

배수설비 검사표

1. 사업장 현황

건축·시설물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준공검사일	(설치신고일 :)			
사업장	건물용도		건축연면적	

2. 점검사항

주요 점검사항	점 검 결 과	비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여부		
◦ 배수설비 정상 시공 여부		
◦ 유지차단장치 설치 여부		
◦ 스크린 및 모래받이 설치 여부		
◦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3.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검사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④ (생략)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제2항의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1.~ 2.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9조(배수설비 유지·관리) 1.~2. (현행과 같음) 3. 군수는 제1호와 관련한 배수 설비 유지·관리에 대해 세부사 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나 제해시설의 검사(점검)은 별표9의 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② (생략)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③ (생략)	제15조(개별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면 등)① (생략), 1~2 (생략)	제19조(감면 등)① (생략) 1~2 (생략)
3. -----중수도를-----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을-----

4.~9.(생 략)

4.~9.(생 략)